

1. 개정이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4조 관련 별표 2)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 50m 주위에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에 한함)이 있는 부지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 중 “법 제52조제1항제4호”를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